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0. 1.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보조금 지원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지원 규정에 위배되므로 지원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보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권고 조치에 따라 관련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 의정회는 구미시 및 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 및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회가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삭제)
 - 구미시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 행정자료 제공·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신설)
 - 의정회는 구미시 및 의회에 대하여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 및 자료 등의 제공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의정회는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기금 또는 보조의 제한)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3항(공공기관의 범위 등)
- 대법원 의정회 지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판결(2002추16, 2004.4.23)
- 감사원 처분요구, 행안부 의정회지원 조례개정 권고 3회 등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행정자료 제공·지원등) ①의정회는 구미시·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의 교부) 구미시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신설)	제8조의2(행정자료 제공 · 지원등) ①의정회는 구미시 ·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